제300회 서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제 1 차 행 정 문 화 복 지 위 원 회

서산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(의안번호 제516호)

2024. 11.

전문위원	사무국장	결재	행정문화복지위원장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516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2. 제안이유

○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기준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부담 악화

○ 충남도에서 기출연금 및 소상공인수를 감안하여 2025년도 출연금을 책정하였으며, 시 재정운영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 조정

➠ 도 요구액 : 19억원, 조정액: 11억

○「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7조(특례보증 지원)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출연기관 : 충남신용보증재단

❍ 출연금 : 11억원(시비)

※ 보증규모 추정액 : 132억원(출연금의 12배)

❍ 지원대상 : 관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·소상공인

※ 제외업종: 유흥주점업, 부동산업, 금융업, 보험업 등

❍ 지원한도 :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

❍ 이자지원 : 2.5%(도비)

❍ 사업내용: 소상공인의 저리자금 대출을 위한 채무보증 및 이자보전

4. 출연근거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 「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7조

5. 검토 의견

○ 이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.

○ 이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7조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○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